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10. 21.
발 의 자 : 유동균위원 외 1인

1. 개정이유

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며,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·사업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의원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본회의 중 의원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함.

3. 관련법규

가. 『지방자치법』 제71조

나. 『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32조

4. 개정규칙안 : 별첨1

5. 예산조치 : 불필요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불필요

나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다. 관련법규 : 별첨2

【별첨1】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오전 12시 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32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 (이하 “5분자유발언” 이라 한다) 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</p>

【별첨2】

【관련법규】

[지방자치법]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[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]

제32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다만,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